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☑조치 □기타)

	담당 부서 IT·금융정보보호단 담당자 구원호 (직위, 성명) 팀장 연락처 02-3145-7415
요청대상 행위	□ 망분리 관련 보안솔루션 적용시 보안망, 인터넷망, 업무망으로 분리하는 방화벽을 통해 각각의 보안솔루션을 포트만 오픈하며, 업무망 및 인터넷망-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
판단	□ 요청하신 방식의 경우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5조제1항제3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	□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연결됩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·차단하거나 접속을 금지시켜야 합니다.
판단이유	□ 방화벽과 같은 보안장비를 이용하여 통제하더라도 외부망에서 업무망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을 경우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·차단한 것으 해당하지 않으므로,
	○ 하나의 보안솔루션을 인터넷망과 업무망 모두에서 사용하기 위해 망간 접속이 가능한 경우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
	□ 아울러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('13.9월)은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으소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※ <u>비조치의견서의 효력</u>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 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
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